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본부 지방○○○○○ ○○○  
(전 ○○○○과 지방○○○○)

② 울산광역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09. 1. 29.부터 2014. 8. 7.까지, 지방○○○○○  
○○○는 2016. 7. 14.부터 현재까지 각각 울산광역시 ○○○○과에 근무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사업”과 “○○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  
수 재이용사업” 입찰공고 등의 업무 실무담당자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  
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  
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에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제2호<sup>1)</sup>에 해당하는 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1)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제2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  
[별표 1]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울산광역시 ○○○○국 ○○○○과는 2014. 7. 2.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Q=40,000m<sup>3</sup>/일)”<sup>2)</sup>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로 명시하여 관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공고함으로써, 2014. 7. 3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sup>3)</sup>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2014. 8. 6.부터 2015. 8. 5.까지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재이용시설을 무자격자가 설치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 ○○○○과는 2017. 3. 6. “○○하수처리시설 3차처리(Q=60,000m<sup>3</sup>/일)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Q=45,000m<sup>3</sup>/일)”<sup>4)</sup>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로 명시하여 관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공고하였고,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물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별표1 제2호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지 않

---

2)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 처리수를 ○○강 중류지역으로 이송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 공사금액(1,139백만원)

3)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도급업체 : (유)○○○○(상하수도공사업), ○○○○○(주)(상하수도공사업)

4) ○○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 3차처리 후 처리수를 ○○강 상류지역으로 이송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 공사금액(6,257백만원)

고 공고함으로써, 2017. 4.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에 등록하지 않고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sup>5)</sup>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2017. 4. 11.부터 2019. 10. 10. 준공예정으로 “○○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재이용시설을 무자격자가 설치·시공 중에 있다.

위와 같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입찰공고 등을 진행한 지방○○○○○ ○○○와 지방○○○○○○○는 실무책임이 있다.

## 2.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지연

울산광역시 ○○○○과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시설’은 2014. 8. 9. 공사 착공 후 243일이 지난 2015. 4. 7. 신청하여 2015. 4. 7. 설치승인 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2017. 4. 11. 공사 착공 후 10일이 지난 2017. 4. 21. 신청하여 2017. 4. 24. 설치승인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

---

5) ○○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도급업체 : ○○○○○○(주)(토목건축공사업)

설을 설치 시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